

『陶藝研究』 간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에서 발간하는 『陶藝研究』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일자)

학술지의 간행은 매년 1회로 하며, 발행일은 12월 10일로 한다.

제3조 (논문투고)

가. 학술지에 도자예술, 도자사, 도예평론, 도자문화사, 도자원료학 등 다방면의 도예 관련 연구 논문 이외에도 서평, 전시평, 보고서, 자료집, 연구 및 분석사례 등을 수록할 수 있다.

나. 논문의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국내외의 연구자 및 해당분야 학술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 잡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라.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발간된 논문의 경우, 학술적 기여도와 중요성이 인정되면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번역 후 게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출판사향을 반드시 각 주 1에 명기하고 투고방식은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에 준수하여 작성한다.

마. 논문 투고자는 논문제출 2개월 전인 6월 20일까지 논문투고신청서와 국문초록을 제출하고, 8월 20일까지 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카피킬러 표절률 확인서, 심사논문 일체 (국문, 영문초록 포함)를 도예연구소 전용 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바.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논문투고규정」에서 정한다.

사. 게재료는 「논문투고규정」에서 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가. 학회지 간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국내외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 혹은 본교 학술담당 전임교수로 한다.

라. 편집위원은 학문적 업적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한다.

마.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바.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위해 편집간사 및 연구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는 『陶藝研究』 발간을 위한 회의, 심사, 자문, 논문 모집, 심사 및 게재 여부, 편집, 간행, 심사위원 위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나. 편집위원회 소집은 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편집위원장은 적합한 사유에 따라 임시위원회를 해당 위원에 한해 소집할 수 있다.

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 편집간사 및 연구원은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편집위원에게 보고한다. 편집회의결과보고서는 회의 종료 1주일 이내 각 편집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

제6조 (논문 작성의 총체적인 기준)

가. 투고논문은 본 연구소의 학술 목적과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투고 지침에 의거한 형식 및 분량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가져야한다.

나. 투고된 논문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한다.

- ① 새로운 주제와 자료의 발굴
- ②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논문 구성과 논점을 제시
- ③ 참조문헌, 인용문, 이미지 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시
- ④ 관련 학계의 기여도와 후속 연구의 제시

다. 편집위원회를 통해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성실하게 수정에 임한다.

라. 투고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연구소 사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

가.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나. 다만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제8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가. 연구소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조직한다.

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윤리위원은 학술적 심의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라. 윤리위원의 1명 이상은 본 연구소 소속 이외의 위원을 반드시 위촉한다.

마.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임시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바. 윤리위원은 연구소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위원회의 운영)

가. 연구소는 원활한 학술연구와 학술행사, 학술지 편집 및 기획, 출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운영한다.

나.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을 비롯해 연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실무를 위해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학술 관련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라. 연구위원회는 춘, 추계 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임시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마. 연구위원장과 연구위원은 연구소 소장 및 연구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바. 연구위원은 해당 학술분야에 박사 수료 이상의 신진 연구자를 임명하지만, 석사급 이상 연구자 가운데 탁월한 학술 및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임명할 수 있

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규정설정) 본 규정은 도예연구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모든 사항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제4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5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6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발효한다.